

● 공통자격을 갖추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
가. 기회균등대상자

구분	자격요건
법정대상자	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※ 차상위계층은 1)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 3)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※ 교육지원대상자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해당자)가 아닌 경우 4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※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(법정 한부모가족)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일반적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과는 구분
비법정대상자	1)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2)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(〈표1〉 참조) ※ 학교장추천자는 1)에 따른 저소득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기타 신용불량, 또는 가족의 장기 질환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내에 【학교장 추천위원회】(〈표2〉 참조)를 구성하고, 심의 후 의결을 거쳐 추천한 학생

〈표1〉 【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예시】

-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(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)
-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
- 부양의무자의 질병·사고·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, 생계에 곤란이 있는 경우
-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·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
- 부양의무자가 1주택 거주자로, 그 주택이 경매 중이라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

〈표2〉 【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】

구성(예시)	● 학교장, 교원,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7~9명으로 구성 ※ 학교 규모가 학년당 200명 이하인 경우 5명으로 구성
심의사항	●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적합한지 여부,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적합성 여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천위원회 의견서 작성 등 ※ 심의과정에서 성적 등에 대한 심사는 할 수 없으며, 학생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학생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의 방식 자제, 개인정보 및 심사 내용 보안 철저